

#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이윤철<sup>+</sup>·여숙경<sup>++</sup>

##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Lee, Yun-cheol<sup>+</sup>, Yeo, Sook-Kyung<sup>++</sup>

**Abstract :** Small vessels of less tha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Key words :** Marine Leisure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registry, safety inspection, marine leisure insurance, Ship Act, Ship Safety Act

### 1. 서론

주 5일제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우리나라 수상레저안전법이 2005년 3월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개관하고,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공법상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과 사법상의 수상레저보험제도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상의 개정방향과의 문제점을 차별화 함으로써 건전한 수상레저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주요내용

#### 2.1 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고,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 교부된다(법 제4조 및 제6조).

한편, 조종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상안전교육과 관한 사항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2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자는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운항시에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야간수상레저활동은 금지되고 있으나 규

정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활동자는 동승한 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3 안전관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교부받는다. 등록에는 신규·변경·말소·등록 등이 있다. 또한 등록대상 기구의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기구에 대하여 신규·정기·임시·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5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계절적 영향을 받기 쉬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안전검사 대행기관 및 형식승인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3.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 3.1 총칙

+ 이윤철(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E-mail: lyc@mail.hhu.ac.kr, Tel: 051)410-4279

++ 여숙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교통정보학과 해사법무정책전공

수상레저기구의 정의를 수상레저기구의 다양화, 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15가지 기구와 유사한 구조형태-운항방식을 가진 기구를 추가하였다.

### 3.2 조종면허

면허시험 일부면제 및 수상안전교육 면제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와 면허증 발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시험대행기관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3 안전준수의무

기본 인명안전장비에서 호각과 구명동의등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추가하였고, 원거리수상레저활동자 신고 의무기준을 해안에서 5해리를 출항지에서 5해리로 개정하였으며, 운항규칙에서 다른 활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무면허조종의 예외에서 1급면허소지자의 조건으로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의 상태를 금지하였고,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예외로 야간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운항장비를 기존의 장비 외에 GPS와 구명동의등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안전검사중에 기재된 정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주취단속권한을 육상경찰공무원도 포함하여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였다.

### 3.4 안전관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 안건 등에 관하여 신설하였다.

### 3.5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1.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단, 선대기 제외) 2. 수상오토바이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등록번호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멸실 등의 경우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수상기구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등록의 전제조건이며, 구조 혹은 장치의 변경시에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안전검사는 대행기관에서 행해지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규정을 준용한다.

### 3.6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였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수상레저의 특성을 고려한 휴폐업의 절차를 신설하였다.

한편, 수상레저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 인증절차 등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신청가능한 대상,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신설하였다. 또한 형식승인시험의 신청에 관한 절차와 형식승인 및 검정을 위한 절차도 규정하였다.

## 4.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 및 도입방안

기존에는 사업자에 대한 보험제도만 도입하였다. 그러나 레저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책중의 하나로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 대하여 개정법 제34조에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였다. 보험가입 대상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레저기구 중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로한다.

현재 위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수상레저보험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도입시에는 규정된 대인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액이 강제보험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지급하기 위한 임의적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도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가품인 선체에 대한 선체보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물배상책임보험, 해상레저의 경우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수색구조비용보험의 개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결론

2005년 3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수상레저활동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관하여 신설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형동력선박에 대한 등록과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형선박제도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에서의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개정과 적용대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입법체계상의 목적과 논리에 근거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수상레저에 활용되는 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그 외의 목적은 선박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상 타당하며, 검사제도 또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의 검사제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1] 강동수,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11호, 2003.
- [2] 김진선,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해양개발 기본계획", 수상레저산업에 관한 워크샵자료, 2004.
- [3] 남광률, "선회기선박의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양안전 2004년 여름호.
- [4] 반석호, 김상현, "수상레저사업의 법제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 [5] 선박검사기술협회,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2004.
- [6] 한국중소조선기술연구소, "해양레저산업 전수조사 보고서", 2003.